



2020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란?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분쟁 상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통해 청소년활동 참여자(기관, 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등)에 대한 법률상 권리를 강화하고 원활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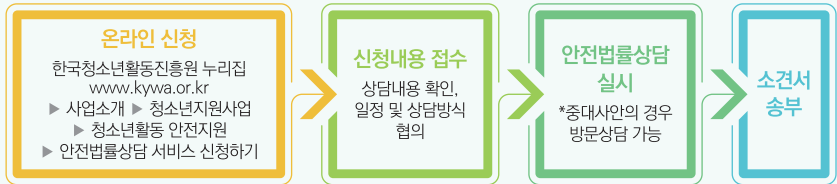
상담범위

-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상해, 성범죄, 시설물, 음식물, 교통 등) 관련 분쟁사항 법률자문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 운영사항(프로그램, 지도자, 활동시설 등)에 대한 법률 해석 등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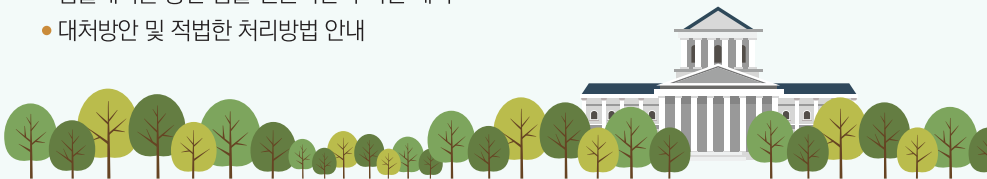
- 운영기관 관계자, 활동지도자, 참가자,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누구나

상담절차 및 방식



상담내용

- 해당 사건에 대한 타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해당 사건과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 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대처방안 및 적절한 처리방법 안내



※ 본 사례집에 소개된 안전법률 상담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Contents



활동운영 관련

01.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청소년 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3
02. 활동 참가비 환불규정	4
03.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통학 외 이용 차량 및 버스 계약 시 적용 여부)	6
04.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신고의무 이행 시기 등)	8
05.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택시나 장기렌트 등을 활용한 어린이 통학 이용 가능 여부)	10
06. 청소년시설물 지역주민 개방 및 위탁 운영 가능 여부	12

활동시설 관련

07.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건축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사용 범위	13
08. 개발제한 구역 청소년수련시설 내 모험활동시설 설치	14
09. 수련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16
10. 수련관의 일부 공간을 야영장 대관 가능 여부	18

안전사고 관련

11. 야영활동 중 수련시설에서 제공한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20
12. 청소년이 직접 조리한 음식물을 나눔하거나 판매할 시 식중독 사고 발생	21
13. 이용자 분실물 발생에 대한 분쟁 시 처리방법	22
14.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는 시설의 공용공간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23
15. 자원봉사활동 참가 중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제한 가능 여부	24
16. 안전사고 발생 시 CCTV 영상 열람 절차	26

알아두면 유익한 청소년활동 안전법률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주요내용 안내	28
■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안내	30

상담개요

- 코로나19 예방조치 목적의 출입명부 작성 시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법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意的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생략...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소견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참조).
- 따라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즉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후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서 직접 동의 가능).
- 코로나19 예방조치 목적의 출입명부 작성 시에도 출입자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출입자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를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상담개요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참가비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환불해주지 않아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질의 1.)
- 환불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예를 들어 30일)이 지난 경우 환불해주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인지, 또한 위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줄일 수 있는지(질의 2.)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서 참가신청, 참가비 결제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이러한 거래가 전자상거래에 속하는지(질의 3.)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생략...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為)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이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소견내용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참가비 등 환불에 대한 검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참가비 등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현행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는 환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환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불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임.
- 사안의 경우에서처럼 일정한 기간(30일)이 지난 경우 등에도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약정이 있다면 참가비 등을 환불해주지 않아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질의 1.), 나아가 위 일정한 기간 30일의 경우 이를 7일로 줄이는 것도 무방할 것임(질의 2.).
- 다만, 수련시설 등에서 환불 규정을 마련한 경우 이러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함)상 약관*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등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비 등의 환불이 불가하다거나 어느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를 불문하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소지는 있음.
 -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함(약관법 제2조 제1호 참조).
- 나아가 일정한 기간(30일 또는 7일)이 지난 경우 참가비 등을 환불해주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참가신청이나 참가비 결제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참가비 등 환불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명시, 설명하여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為)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 참조), 상행위란 상인이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상법 제46조, 제47조 참조), 또한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 이에,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참가비를 받고 진행하는 청소년활동 사업(프로그램)을 상인의 상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에 관하여 이를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이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참조), 청소년활동 참가신청과 참가비 결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는 것만으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전자상거래법상 “전자 상거래”나 “통신판매”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전자상거래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질의 3.).

상담개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① 외부활동 시 일시 이용 차량 및 병원이송용 차량의 경우 적용 여부(질의 1.), ② 버스계약 시 적용 여부 등(질의 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략...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 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춘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질의 1.

-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참조),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여기서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위와 같은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의미하는바(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참조), 어린이의 주거지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경우는 신고 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됨.
- 그러므로 사안에서 차량을 외부활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하거나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병원 이송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차량을 통학 등 외의 용도로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임.

질의 2.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이나 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참조), 특히 자동차의 소유 관계에 관해서는 ① 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② 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함.
-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명의의 차량이 없다면 시설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사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운송계약 체결 시 해당 운송사업자나 차량 등이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버스를 대여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상담개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신고의무의 이행 시기 등 (현재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차량으로 계약 예정인 경우)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2. ...생략...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가. ~ 다. ...생략...
-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략...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생략...

부칙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춘 것
-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후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소견내용

-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참조),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바,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위와 같이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포함된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 의무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하고 있음(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참조).
- * 그 외에도 개정 도로교통법은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추가된 시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2년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등 부칙에서 여러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는데, 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제53조의5) :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제3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포함된 경우의 보호자 동승 의무 :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유예
제4조	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정보공개 :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
제5조	부칙 제2조·제3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새롭게 포함되는 「체육교습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제6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포함된 경우의 통학버스 운영 신고 의무 :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
제7조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 :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
제8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사항

- 즉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바(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참조), 사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차량으로 계약 예정이므로 신차계약 시 이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 신고하면 될 것임.
-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이나 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참조), 특히 자동차의 소유 관계에 관해서는 ① 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② 시설의 장이 객차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함.
- 사안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차량계약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렌트 차량이나 리스 차량의 경우 위와 같은 자동차의 소유 관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에 관해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상담개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택시나 장기렌트 차량을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략...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생략...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춘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생략...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2. ...생략...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생략...

소견내용

- 도로교통법은 법 제2조 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동법 제52조 제1항 참조),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참조),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이나 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동법 제52조 제3항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이나 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참조), 특히 자동차의 소유 관계에 관해서는 ① 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② 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함.
- 따라서 택시나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위와 같은 자동차의 소유 관계에 관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뿐더러 승차정원(9인승 이상)을 비롯하여 기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요건 등을 충족하기도 어려워 향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상담개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역 내 다른 기관이나 학교 등과 협의하여 수익발생 및 시설 개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생략...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소견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의 시설은 공유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하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참조).
-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審附採納)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을 말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4항, 제5항 참조).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참조).
-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도 지역 내 다른 기관이나 학교 등과 협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시설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정해진 관리위탁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안 되므로 위탁조건에 위와 같은 형태의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한편,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인바, 이 경우에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의 용도 관련 규정은 준수되어야 할 것임.

상담개요

- 청소년수련시설의 옥상 물탱크실 지붕에도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적용 여부)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차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 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3]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소견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 3]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참조).
- 한편,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①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② 이에 딸린 시설물(예를 들어 담장, 대문 등), ③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의미함(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 사안의 물탱크실의 경우 질의 내용에서 구조나 형태 등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지붕과 벽(또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위 물탱크실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에 설치되는 물탱크실은 (비록 옥상에 설치된다고는 하나) 숙박·집회시설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청소년수련시설의 옥상 물탱크실 지붕에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된다 할 것임.

상담개요

-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 집라인(zip-line) 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절차 등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생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생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자. 청소년수련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바목(가)을 준용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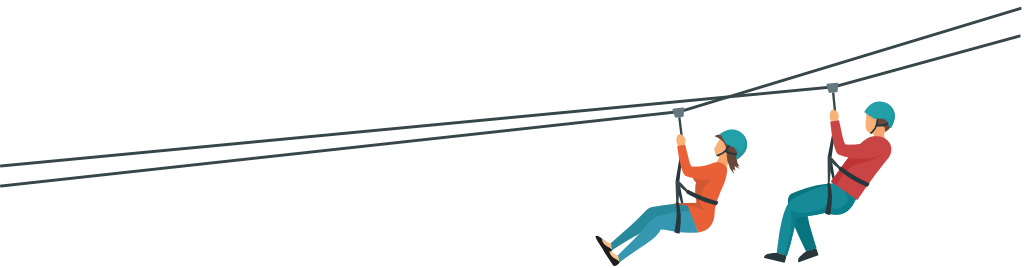
1. 공통기준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구분	기준
3) 특성화수련 활동장	라)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신체의 강건함·용기·인내심·탐험정신·도전의식·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 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소견내용

- 현재로서는 집라인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이나 안전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다만, 탑승자가 타고 내리는 타워(데크, deck)의 경우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절차를 거쳐 집라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 집라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음.
- 그런데 위와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집라인 시설 등의 특성화수련활동장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뒤 집라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시설의 규모나 범위, 지리적 조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제2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집라인 활동 등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미리 인종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상담개요

- 유스호스텔 내 카페시설 설치 가능 여부(질의 1.)
- 가능하다면,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질의 2.)

질문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 ~ 다. ...생략...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생략...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 마. ...생략...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서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생략...

소견내용

- 건축법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수련시설)"과 "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은 부속용도로서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참조).
-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 법령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를 위한 시설로서 부대·편익시설을 전제하고 있으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바목, 제31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5호 등 참조), 부대·편익시설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오히려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휴게음식점 시설 등 설치를 전제로 하여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휴게음식점영업 포함)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참조), 유스호스텔의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의 경우 청소년 외의 자에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 참조).

-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내 휴게음식점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필요한 시설로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 관련 법령에 따른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유스호스텔 내에 유스호스텔의 부대시설로서 휴게음식점인 카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집의 2.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변경

소견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련법령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참조).
- 여기서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에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카페 등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므로(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등 참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 참고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참조),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에는 ① 운영대표자의 변경, ②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및 ③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변경 등이 해당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참조).

상담개요

- 청소년수련관 내 일부 시설(공터)을 야영장으로 대관 가능한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등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소견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①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용도로만 수련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조).
-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 제19조 등 참조). 예를 들어 야영지의 경우 야영정원 1인당 20㎡ 이상이어야 하고, 자가취사장·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공터를 야영에 제공할 경우 위와 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내 일부 시설(공터)을 야영장으로 대관하여 야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로서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 등과는 별도의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청소년수련관의 고유한 기능 등에도 어긋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안전사고의 발생 경위나 사고의 유형 등에 따라 책임의 소재나 범위 등이 다양할 수 있는바, 청소년수련관 또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주체로서 (비록 시설을 대관만 하였을 뿐이라고는 하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은 부담하게 될 것임(책임의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담개요

- 야영장에서 야영활동 진행 중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서 지급받은 조리도구 및 식자재를 활용하여 직접 조리하여 취식한 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소재 및 보상처리방안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 나. ...생략...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생략...

소견내용

- 식중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청소년 측에서 ① 식중독의 원인 사실(수련시설에서 제공한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② 식중독의 발생 사실, ③ 식중독 발생이 수련시설에서 제공한 조리도구나 식자재 때문이라는 사실(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함(민법 제750조 참조).
- 다만, 법원은 식중독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증상이 바로 나타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 사안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조리하여 취식을 하는 과정에서 수련시설에서 조리도구 및 식자재를 제공하였고, 제공된 식자재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므로 식중독 발생에 대하여 수련시설 측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증책임에 관해서도 함께 음식을 먹은 여러 명의 청소년들에게서 동시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리도구나 식자재를 제공한 수련시설 측에 식중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수련시설 역시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면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 또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바, 일단 수련시설 측에서 청소년들에게 배상한 경우 위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수련시설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청소년들에게 ① 적극 손해로서 치료비 기타 경비, ② 위자료, ③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 청소년활동동배상책임보험에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상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보험사와 사이에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상담개요

- 청소년 활동이나 행사 등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조리하여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보상방법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 나. ...생략...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생략...

소견내용

- 식중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측에서 ① 식중독의 원인 사실(청소년 활동이나 행사 등에서 제공된 음식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② 식중독의 발생 사실, ③ 식중독 발생이 청소년 활동이나 행사 등에서 제공된 음식물 때문이라는 사실(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함(민법 제750조 참조).
- 위와 같은 사실들이 증명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데, 다만, 법원은 식중독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증상이 바로 나타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 사안의 경우 식중독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즉 누구의, 어느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잘못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청소년 활동이나 행사 등에서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진행한 수련시설 측에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임.
- 나이가 입증책임에 관해서도 함께 음식을 먹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서 동시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나 식중독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클 것임.
- 한편, 식중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수련시설 측에만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식중독의 발생 원인이 식자재 때문인 경우이고 수련시설 역시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면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 또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바, 일단 수련시설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경우 위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수련시설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① 적극 손해로서 치료비 기타 경비, ② 위자료, ③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에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상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보험사와 사이에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상담개요

-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대관 중 분실물(복)과 관련하여, 복을 분실한 지역주민이 시설에서 복을 임의로 폐기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안 등(시설에서 확인 시 시설 안에 복은 없었고, 입구에 개인물품은 개인이 잘 보관하라고 A4용지를 붙여놓음)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소견내용

-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복을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 집, 이하 '시설'이라고만 합니다)에서 임의로 폐기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상대방은 ① 시설에 복이 있었다는 사실, ② 시설에서 복을 임의로 폐기 처분하였다는 사실(원인), ③ 이로 인하여 복의 가치(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결과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함(민법 제750조 참조).
- 위와 같은 사실들이 증명될 경우 시설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데, 시설에서 복을 임의로 폐기 처분했는지에 앞서 시설에 복이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불분명하므로 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시설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관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시설과 상대방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 보관 관계(임치 등)나 시설의 이용 관계가 성립하였는지를 우선으로 판단하는 데에 있어 그 성립 여부, 다시 말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이 있었는지 등에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복이 시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런데 만약 복이 시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시설은 상대방과의 사이에 임치 등 계약상 보관 관계나 시설의 이용관계에서 비롯하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상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참조).
- 이러한 책임은 시설 입구에 개인물품은 개인이 잘 보관하라고 A4용지를 붙여놓은 것만으로는 면하여질 수 없고(상법 제152조 제3항 참조), 책임의 유무나 범위에 관해서는 복이 사라진 경우(상대방이 복을 분실하였는지, 시설에서 임의 폐기하였는지 등), 시설에서 얼마만큼의 주의를 기울였는지(CCTV 설치 여부나 시건장치 등 관리의 정도), 시설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 정도, 상대방의 과실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될 것임.

상담개요

- 여러 기관이 입주해있는 시설의 공용공간(계단, 앞마당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소견내용

-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우선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며, 그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됨(민법 758조 제1항 참조).

- 사안의 경우 우선 건물의 공용공간(계단, 앞마당 등)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시설물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임), 시설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먼저 시설물의 점유자가 1차로 책임을 지고, 만약 점유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됨.

- 사안의 경우 시설물(공용공간)의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계단, 앞마당 등 건물의 공용공간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각 전용공간을 임대 하는 데 있어 함께 임대의 목적물에 포함되므로 일단은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어느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그것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건물의 소유자 역시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그 공용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임(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참조).

- 결론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인바,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이나, 여기서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한편, 피해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피해액이 큰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상담개요

- 자원봉사활동 연계 시 기 봉사활동 중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에 대한 봉사활동 제한 가능 여부 등

관련법령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생략...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략...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소견내용

- (청소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관련 법령의 해석상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헌법 제11조 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 등 참조), 청소년은 징계, 보호처분, * 형사처벌 등(이하 “징계 등”이라고 함)을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
 - * 소년법 제32조 제5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이며, 따라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원 송치처분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기 봉사활동 중의 행동으로 징계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봉사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청소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헌법상 평등의 의미 및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한편, 헌법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바, 상대적 평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을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에 반한다고 할 것임.
- 사안과 관련하여서도 기 봉사활동 중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차별하여 청소년의 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예를 들어 봉사활동 신청의 이용약관 내 자원봉사자의 의무와 자원봉사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등 조항을 넣는 방식 등을 통한 참여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위와 같은 차별도 가능하다 할 것임.

- 평등의 의미를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과연 어떠한 차별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별 취급이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에서 “징계처분과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며,”라고 하여 비례성 원칙의 충족 여부를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2. 1. 27. 결정 11진정0367600 참조).
 - *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봉사명령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 (사안의 경우) 기 봉사활동 중의 행동으로 징계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봉사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청소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여기에 더하여 징계 등의 원인이 되었던 행동과 징계 등의 수준(정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징계 등이 있는 후로부터의 기간, 징계 등 이후 청소년의 변화, 평소 청소년의 행실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뒤 불가피한 경우에만 참여를 제한해야 할 것이며, 제한하는 정도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인바, 단지 과거 징계 등을 받았던 사실에만 근거해 활동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임.



상담개요

- 청소년 안전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허용 여부 및 절차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소견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는바, 예를 들어 CCTV 영상 속에 강사와 해당 청소년만 있는 경우에는 강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정보주체(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보호자))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에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는 Masking 처리한 후 열람시켜주거나 그 다른 사람(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이를 열람시켜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등 참조).
- 정보주체로부터 열람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술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때 영상정보처리기술운영자는 열람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제3항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술운영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제5항 참조, 이 경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음).
 -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②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알아두면 유익한
청소년활동 안전법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주요내용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법 제52조 제1항)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
-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신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 부과
*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 시 포함

2.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법 제52조 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며,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춘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요건 미구비 운행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 부과

3.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법 제53조 제3항)

-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함.
-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4. 동승보호자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법 제53조 제6항)

-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함.

5.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법 제53조의5)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

6.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법 제53조 제4항, 제5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할 의무 및 운행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작동 의무

7.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법 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전자 등에서 동승보호자로 확대

8.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 개정 도로교통법은 새롭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추가된 시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포함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 의무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하고 있는 등 부칙에서 여러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음.
- 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제53조의5) :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제3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포함된 경우의 보호자 동승 의무 :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유예
제4조	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정보공개 :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
제5조	부칙 제2조·제3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새롭게 포함되는 '체육교습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제6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에 포함된 경우의 통학버스 운영 신고 의무 :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
제7조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 :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
제8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사항

1.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보험 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생략...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 등 보험 가입 의무

- 대상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 보험금액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일 것
- ※ 법상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가능하나 수련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입 필요(권고)

3.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

- 특화된 보험 상품의 하나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이 있음.
-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관리, 운영 또는 주최하는 청소년활동의 참가자에게 청소년활동 수행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청소년활동 수행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참가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
 1.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지불한 민사합의금
 - : 상해사고의 경우 상해 치료비, 휴업손실, 후유장애, 위자료 등
 - :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 또는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와 합의한 금액
 - : 민사합의가 결렬되어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 법원의 판결금액
 2. 피보험자가 지출한 법률 비용(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조정 등에 관한 비용 등)
 3. 손해감감비용(응급처치비용, 긴급호송비용 등), 기타비용(소송, 공탁보증보험료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참가자가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을 임의로 이탈한 상태에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청소년활동 수행 중에 참가자가 피보험자의 정상적인 관리, 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참가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
 - 청소년활동의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 고려 및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특약 또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행일 2020년 12월
디자인·인쇄 대원인쇄주식회사 (Tel 02.2261.1788)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사례집에 소개된 안전법률 상담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020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

KV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